

# 서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2. 9. 10  
의회운영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02. 9. 3
- 나. 제출자 : 성두현의원외 7인
- 다. 회부일자 : 2002. 9. 6
- 라. 상정일자 : 2002. 9. 10

## 2. 제안설명요지(제안설명 : 김완경 의원)

### 가. 제안이유

- 공무원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여비지급등의 금액을 이에 맞도록 조정하고자 하는 것임.

### 나. 주요골자

- 국내여비중 숙박비 및 식비를 상향조정함(안 별표 2).
- 국외여비중 일비 및 숙박비를 상향조정함(안 별표 3).

##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중 여비지급규정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제1항 별표 7 및 별표 8에서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 또한, 같은법시행령 별표 7, 별표 8의 비고란 '3' 및 '2' 를 보면 공무원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여비지급범위를 조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 영이 개정되기까지는 공무원 국내 및 국외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조례를 조정하여 지급 할 수 있도록 규정 되어 있는바
- 지방자치법시행령 별표 7, 별표 8이 지난 '99. 12. 31일 개정된 이후 개정되지 않았으나 공무원여비규정은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도록 상향조정하려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 하다고 사료됨.

4.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 및 소수의견 : 없었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의안번호	제 4 호
의 결 년 월 일	2002. 9. . (제 회)

## 서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발 의 자	성두현 의원외 7 인
발의년월일	2002. 9. 3.

# 서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
----------	---

발의년월일 : 2002. 9. 3.  
발 의 자 : 성두현의원외 7인

## □ 개정이유

- 공무원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여비지급 등의 금액을 이에 맞도록 조정하고자 하는 것임

## □ 주요골자

- 국내 및 국외 여비지급기준중 일비, 숙박비, 식비 등을 상향 조정함(안 별표2, 별표3)

## □ 참고사항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 공무원여비규정 별표2, 별표4

## 서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중 의장, 부의장 및 의원의 숙박비(1야당) 및 식비(1일당)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숙박비(1야당)	식비(1일당)
의장, 부의장	46,000	25,000
의 원	25,000	18,000

별표3중 의장, 부의장 및 의원의 일비(1일당) 및 숙박비(1야당)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일비(1일당)	숙박비(1야당)
의장, 부의장	가등급 : 35, 나등급 : 35	가등급 : 151, 나등급 : 109
	다등급 : 35, 라등급 : 35	다등급 : 84, 라등급 : 72
의 원	가등급 : 30, 나등급 : 30	가등급 : 132, 나등급 : 86
	다등급 : 30, 라등급 : 30	다등급 : 64, 라등급 : 56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2]		[별표2]															
국내여비지급기준표(제5조제2항관련)		국내여비지급기준표(제5조제2항관련)															
		(단위 : 원)															
구분	철도임운	선운	박임운	항공임운	자동차운임	현지교통비(1일당)	숙박비(1야당)	식비(1일당)	구분	철도임운	선운	박임운	항공임운	자동차운임	현지교통비(1일당)	숙박비(1야당)	식비(1일당)
의장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41,000	11,000	의장	(현행과같음)	(현행과같음)	(현행과같음)	(현행과같음)	(현행과같음)	(현행과같음)	46,000	25,000
부의장									부의장	(현행과같음)	(현행과같음)	(현행과같음)	(현행과같음)	(현행과같음)	(현행과같음)		
의원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22,000	10,500	의원	(현행과같음)	(현행과같음)	(현행과같음)	(현행과같음)	(현행과같음)	(현행과같음)	25,000	18,000
[별표3]		[별표3]															
국외여비지급기준표(제5조제3항관련)		국외여비지급기준표(제5조제3항관련)															
		(단위 : 미불화)															
구분	항공임운(생략)	일비(1일당)	숙박비(1야당)	식비(1일당)	15일 미만	15일 이상 30일 미만	30일 이상	구분	항공임운	일비(1일당)	숙박비(1야당)	식비(1일당)	15일 미만	15일 이상 30일 미만	30일 이상		
의장	(생략)	가등급: 55 나등급: 55 다등급: 55 라등급: 55	가등급: 157 나등급: 99 다등급: 76 라등급: 65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의장	(현행과같음)	가등급: 55 나등급: 55 다등급: 55 라등급: 55	가등급: 151 나등급: 109 다등급: 84 라등급: 72	(현행과같음)	(현행과같음)	(현행과같음)	(현행과같음)		
부의장		가등급: 20 나등급: 20 다등급: 20 라등급: 20	가등급: 120 나등급: 78 다등급: 58 라등급: 51	(생략)	(생략)	(생략)	(생략)	부의장	(현행과같음)	가등급: 30 나등급: 30 다등급: 30 라등급: 30	가등급: 132 나등급: 86 다등급: 64 라등급: 56	(현행과같음)	(현행과같음)	(현행과같음)	(현행과같음)		
의원	(생략)	가등급: 20 나등급: 20 다등급: 20 라등급: 20	가등급: 120 나등급: 78 다등급: 58 라등급: 51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의원	(현행과같음)	가등급: 30 나등급: 30 다등급: 30 라등급: 30	가등급: 132 나등급: 86 다등급: 64 라등급: 56	(현행과같음)	(현행과같음)	(현행과같음)	(현행과같음)		